

세무회계저널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p.185~212
한국세무학회

사업자단체 지원·활용을 통한 세원관리 연구

서희열* · 김유찬** · 심태섭***

<요 약>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지역담당제의 폐지 조치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여 각 사업자에게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세무협력단체로서 규정된 사업자단체는 상설집단상가(시장)공평과세협의회, 동업자납세자협회,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많은 사업자단체가 명목만 유지되고 있을 뿐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부활시키고,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로 사업자단체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구현에 협조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성실하게 협조한 사업자단체에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규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자단체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단순협력사업자단체로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당국의 성실신고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혜택을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반대로 세무당국의 성실신고노력에 역행하는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제거하여 투명한 세원관리로의 전환 기회를 마련하고 중견 직원 위주 세원관리에 의한 유착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는 각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체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업자단체, 세무협력단체, 세원관리

*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교수, suhhy@kangnam.ac.kr, 031-280-3810, 공동저자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yckim57@kmu.ac.kr, 053-580-6422, 공동저자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02-799-1403, 공동저자(교신저자)

I. 서 론

우리나라 국세청은 1999년 9월의 대규모 개편이후,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여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행정력 보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납세자와 국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취하여 왔고, 이러한 개혁조치로 각종 평가결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¹⁾

그러나 납세자 및 세무행정이용자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로 인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 측면은 다소 소홀하여져 왔다. 특히, 기능별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와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불성실행위를 막기가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세원관리 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즉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세무신고가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고로 맡겨져 있어, 명의위장, 자료상, 무자료거래 등을 통하여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²⁾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겉으로 잘 들어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국세행정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이에 일부 사업자의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원관리 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디지털세정신문 2005). 일부 사업자들의 불성실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사업체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국세행정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른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세무서 직원의 납세자와의 개별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무서 직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업체단체를 새로운 세원관리수단으로 활용하여 각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이 새로이 제안되고 있다.

사업자단체³⁾란 개별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자생적인 단체로서, 국세청에서는 1970년대 초반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부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세무협력단체로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재무부 1990). 그 후 부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정착하고 각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 초기의 활발한 활용에 비하여 최근의 국세청 개혁조치로 현재는 사업자단체를 이용한 세원관리를 거의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는 소속 사업자와 계속적으로 접촉하기에, 최근 세정당국이 사

1) 국세청의 개혁조치는 최근 정부행정기관의 업무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2004년도의 정부 업무평가에서 43개 행정기관중 국세청은 상위10%에 속하는 선도그룹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4).

2) 대표적인 세금탈루행위는 서희열(20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0)에 정리되어 있다.

3)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절에 의하면 사업자단체를 세무협력단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세정당국의 행정에 협조하는 세무협력 단체라는 의미로 사업자단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업자단체를 활용하여 개별 사업자의 불성실한 신고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려 하고 있다(국세청 2005).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가능하면 개별 사업자와의 접촉은 제한적으로 하되,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전체 사업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각 사업자가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새로운 세원관리방법으로 사업자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자단체를 활용하여 개별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체단체를 활용한 세원관리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업자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사업자단체를 이용한 세원관리에 대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후, 임의로 선정된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 사업자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사업자단체를 이용한 세원관리에 대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업자단체의 연혁, 관련 규정 및 현황

1. 사업자단체의 연혁과 관련규정

세무협력단체로서의 사업자단체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인 1971년에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결성되어 오던 성실신고회원조합, 1980년에 집단상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상설집단상가(시장)공평과세협의회(이하 공평과세협의회라 함)⁴⁾, 1981년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결성된 동업자납세자협회(이하 납세자협회라 함), 그리고 자료상 등 무자료 근절을 위하여 1988년부터 결성된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있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정당국은 납세에 관한 홍보, 지도, 상담, 신고를 집단관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정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성실한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무협력단체를 결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이러한 세무협력단체는 공평과세협의회, 납세자협회, 성실신고회원조합과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각 사업자 단체의 결성 및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

4) 공평과세협의회를 집단상가로 표현하기도 한다.

〈표 1〉 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구 분	결성 현황	결성 대상
공평과세협의회	293개	○ 집단상가(시장) 상조회 등
납세자협회	1,409개	○ 음식, 숙박, 소매, 서비스업자 - 기결성 자생 조직 등
성실신고회원조합	22개 조합 (5개계열, 17개업종)	○ 제조업체 전속 판매업자 ○ 동일 종목 취급 제조, 도소매 및 서비스업자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18개 협의회 (회원 423명)	○ 동일 품목 제조·도매업자 - 전자제품, 과자류 등 18개 품목
합 계	1,742개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그리고 사업자단체는 각종 납세홍보의 대행 및 세무상담, 세정에 대한 자문/협회/건의, 가입회원의 각종 민원사항의 처리대행, 가입회원의 각종 신고지도/세금계산서 등 성실수수지도/장부비치 및 기장지도, 회원의 변동사항 파악 및 활동실적 평가 및 보고, 기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37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결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자력관리능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38조). 사업자단체를 세무협력단체로 활용하였던 초기에 세정당국은 1988년 12월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무협력단체인 사업자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무성실도가 평균을 이 상인 단체에 대하여는 신고기준을 경감, 세무조사 면제, 일괄대리신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이 성실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39조).

각 사업자단체별 주요한 연혁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설집단상가(시장)공평과세협의회(공평과세협의회)

가. 공평과세협의회의 연혁

현재의 공평과세협의회는 최초에 (상설)집단상가로 출발하였다. 상설집단상가는 대중 상거래의 중심지로서, 부가가치세제 시행이후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불성실거래, 미등록사업자 및 위장휴폐업의 발생 등 세적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1979년 9월 집단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부산지역의 일부 세무서 관내 집단상가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특별관리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상가내의 자생조직인 상우회 등에 신고업무를 위임하고, 집단지도에 의한 자율신고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성과에

협업어 국세청은 1980년 3월에 「상설집단상가의 특별관리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공평과세협의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공평과세협의회의 결성은 시장 또는 상가, 임대백화점 등 집단상가내의 번영회, 상우회, 새마을분회 등 기존 자치조직을 기초로 하여, 동 회장단으로 하여금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세적관리와 자율적인 신고납부 및 기타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공평과세협의회에 세적관리와 신고의무를 위임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기별로 협의회별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극히 불성실한 협의회 또는 구성원에 대해서만 특별경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정당국은 1988년 12월 사무처리규정 개정시 공평과세협의회 등 세무협력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기준을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나. 공평과세협의회 관련 규정⁵⁾

현재의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상설시장(통상 시장으로 호칭되는 지역), 집단상가(통상 상가로 호칭되는 지역), 임대백화점(다수 사업자형 백화점), 동일 건물내 사업자수가 30인 이상인 대형 복합건물 그리고 기타 공평과세협의회를 결성하여 집단관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지역사업자는 공평과세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사무처리규정 제40조).

공평과세협의회는 기존 자생조직을 기초로 결성하며, 결성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30인 이상으로 결성한다(사무처리규정 제41조와 제42조). 또한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자력관리능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43조). 그리고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협의회가 신고한 공평과세협의회 현황 및 과세상황분석표에 의거하여 협의회별 신고상황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신고상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상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사업자, 부실세금 계산서 수수혐의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전지도 내용에 불응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경정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45조).

다. 공평과세협의회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공평과세협의회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5) 공평과세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사무처리규정 제2관에 규정되어 있다.

〈표 2〉 공평과세협의회 현황⁶⁾

(단위 : 개, 명,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상 가 수		293	140	56	33	21	11	32
사 업 자 수	계 (100)	79,685 (100)	35,277 (44.3)	14,801 (18.6)	13,265 (16.6)	3,764 (4.7)	2,172 (2.7)	10,406 (13.1)
	법인 (6.1)	4,884	2,728	1,056	323	333	3	441
	일반 (64.1)	51,088	27,833	7,879	5,995	1,932	1,597	5,852
	간이 (28.7)	22,903	4,497	5,476	6,947	1,498	572	3,913

(출처) 국세청 내부 자료, ()안은 점유비임

3. 동업자납세자협회(납세자협회)

가. 납세자협회의 연혁

정부는 1981년 8월에 「납세자협회 설치 및 특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납세자협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납세자협회의 설치배경은 세정에 대한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신고납부의 자율화와 세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한편, 점차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치대상은 소매업 중 가구, 귀금속,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동일종목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원 또는 공평과세협의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로, 원칙적으로 세무서 단위로 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급적 기존 자생조직에 의하도록 하였다.

납세자협회의 운영방법은 공평과세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협회의 회장단을 구성하여 세적관리 등에 대한 자문 등 세정당국의 홍보 민원업무대행, 신고지도 등 세정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한편, 납세자협회에 대하여도 세정당국은 1988년 12월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시 동 단체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기준을 경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나. 납세자협회 관련 규정⁷⁾

납세자협회의 결성대상으로는 기존 자생조직이 결성된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자, 기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협회를 결성하여 집단관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47조).

6) 일부 집단상가의 사업자단체 유형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업자 형태별 구성이 100%에 미달한다.

7) 납세자협회에 대한 규정은 사무처리규정 제3권에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협회의 지원관리에 대하여는 제43조와 제45조의 공평과세협의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0조). 이에 따라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납세자협회가 신고한 현황 및 과세 상황분석표에 의거하여 협회별 신고상황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신고상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상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사업자,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협약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전지도 내용에 불응하여 신고한 자의 경우는 경정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납세자협회의 현황

2005년 12월 현재 납세자협회의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납세자 협회 현황

업태	종 목	결성단체수(개)			업태	종 목	결성단체수(개)		
		계	세무서	지방청			계	세무서	지방청
총 합 계		1,409	1,354	55	제조	주 물	1	1	
건설	소 계	17	9	8		컴퓨터게임	1	1	
	건설	9	4	5		프라스틱	1	1	
	전기공사	3	1	2		피 혁	1	1	
	설비공사	2	2		음숙	소 계	419	411	8
	난방시공	1	1			음 식	321	316	5
	엔지니어링	1	1			숙 박	98	95	3
	정보통신공사	1		1	운수	소 계	198	189	9
소 계	209	200	9	택 시		114	110	4	
양 약	77	74	3	중 기		48	48		
잡 화	26	26		개별화물		35	30	5	
귀금속	23	22	1	선 박		1	1		
도 소 매	안 경	20	19	1	전문 용역	소 계	183	167	16
	주유소	11	9	2		공인중개사	54	51	3
	제 과	7	6	1		세무사	36	33	3
	한 약	7	7			건축사	24	22	2
	의 류	5	5			법무사	21	19	2
	주 류	5	5			변호사	11	9	2
	화장품	4	4			공인회계사	9	8	1
	가 스	3	3			의 사	9	9	
	자동차판매	3	3			관세사	5	4	1
	전자제품	3	3			한의사	3	3	
	석 재	2	2			감정평가사	2	2	
	오토바이	2	2			변리사	2	2	

업태	종 목	결성단체수(개)			업태	종 목	결성단체수(개)		
		계	세무서	지방청			계	세무서	지방청
도 소 매	가 구	1	1		전문 용역	수의사	2		2
	건축자재	1	1			측량사	2	2	
	고 물	1	1			기술사	1	1	
	기 계	1	1			미용사	1	1	
	무 역	1		1		손해사정인	1	1	
	산업용품	1	1		서 비 스	소 계	325	322	3
	수산물	1	1			미 용	188	187	1
	오락기	1	1			목 욕	31	29	2
	자동차부품	1	1			자동차정비	24	24	
	전기재료	1	1			세탁	20	20	
	기 타	1	1			휴게실	19	19	
제 조	소 계	52	52			노래방	12	12	
	인 쇄	9	9			당구장	6	6	
	도 정	6	6			학 원	6	6	
	가 구	4	4			중 매	3	3	
	기 계	4	4			PC방	3	3	
	식 품	4	4			게임방	2	2	
	제 빵	3	3			광 고	2	2	
	직 물	3	3			극 장	2	2	
	자동차부품	2	2			택 시	2	2	
	건직물	1	1			관 광	1	1	
	광고물	1	1			안 경	1	1	
	금 형	1	1			여 행	1	1	
	도 금	1	1			자동차세차	1	1	
	레미콘	1	1			기 타	1	1	
	메리야스	1	1		광업		토사석채취	1	1
	봉 제	1	1		부동산 임대	부동산임대	1	1	
	비철제품	1	1		축산	축 산	1	1	
	산업기계	1	1		기타	소 계	3	1	2
	시멘트	1	1			벤처기업	1		1
	염 색	1	1			상공회의소	1		1
	의 류	1	1			항만산업	1	1	
	제 기	1	1						

(출처) 국세청 내부 자료

4. 성실신고회원조합

가. 성실신고회원조합의 연혁

과세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장거래 등 부실자료의 발생임을 인식한 세정당국은 부실자료의 발생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고의무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유도책의 일환으로 성실신고회원조합을 결성토록 하였다. 즉, 동업자조합을 결성토록 하고, 동 조합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에 비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실신고회원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국세청은 1971년 3월에 「성실보고회원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을 근거로 다수의 성실보고회원조합을 결성하였다. 그 후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에 의하여 1977년 9월에 새로운 「성실보고회원조합 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은 납세의무자를 업종별 또는 계열별로 결성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정직한 기장을 촉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그 후 1979년 5월에는 「성실보고회원조합」이 「성실신고회원조합」으로 개칭이 되고, 1981년 12월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지침이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사무처리규정)」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현재는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다.

나. 성실신고회원조합 관련 규정⁸⁾

현행 사무처리규정 제51조에 의하면 성실신고회원조합은 계열별 조합과 업종별 조합으로 구분하여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계열별 조합은 하나의 제조업자와 그에 전속되어 있는 판매업자로 구성되며, 업종별 조합은 동일종목을 취급하는 제조업자 및 도·소매업자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로 이루어진다.

성실신고회원조합에 대하여 회원사에 대한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원 수에 비례하여 필요한 만큼 상근지도요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정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기타 조합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앞의 자격에 준하는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상근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4조).

성실신고회원조합은 회원조합명단, 조합원명단 및 성실신고회원조합성실도평가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60조). 이렇게 제출된 평가표에 의하여 국세청은 각 조합의 성실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별 성실도 판정결과에 따라 성실한 조합으로 판정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성실도 판정 통보후 1년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실납세조합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6조). 다만, 탈세정보에 의한 범칙혐의가 있거나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조사의 필요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 등

8) 성실신고회원조합에 대한 규정은 사무처리규정 제4권에 규정되어 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세정질서 문란행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6조). 또한 관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국장)은 조합이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조합이 자진하여 해산하는 때, 조합원의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빈번한 때,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탈퇴 또는 조합결성 회원수에 미달하는 때, 성실도 판정결과 2년간 계속 불성실 판정조합과 “성실신고회원조합성실도평가표” 미제출 조합으로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7조).

이외에 관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국장)은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원의 자격을 취소토록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8조).

- 조합을 자진하여 탈퇴하는 때
- 지도요원의 계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조합의 운영이 저해된다고 판정된 조합원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불성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자격취소 요구가 있는 때

다. 성실신고회원조합의 현황

2005년 12월 현재 성실신고회원조합의 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4> 성실신고회원조합 현황

(개, 명)

조합명	조합원수			상근지도 요원수	조합 직원수	조합명	조합원수			상근지도 요원수	조합 직원수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보루네오가구	137	33	104	1	1	한국벨브판매	34	8	26	1	1
태평양	425	1	424	1	0	한국시계	42	23	19	1	3
한국타이어판매업	120	38	82	1	1	한국페인트	225	40	185	3	3
퓨리나	45	26	19	1	1	한국합성수지	34	20	14	1	1
서울우유	571	0	571	2	1	설탕업	175	48	127	1	1
강관업	114	109	5	1	2	조미료업	163	27	136	1	3
대한도자기	29	7	22	0	1	전국종합용역업	65	63	2	1	1
문구	77	18	59	1	2	중고자동차수출업체	43	21	22	0	1
알미늄압출 공업	207	70	137	2	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32	16	16	1	1
수산물식품	86	14	72	1	2	오복식품	31	1	30	-	-
의약품	180	172	8	1	3	기린	30	-	30	-	-
(출처) 국세청 내부 자료						합계(22)	2,865	755	2,110	22	32

5.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연혁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세무당국은 무자료 거래 및 탈세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여러 세정상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세제·세정상의 제도적 장치가 한계점을 드러나자, 정부는 1988년에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회를 결성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국세청은 부실거래 혐의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청량음료를 꼽고, 청량음료 대리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착수한 뒤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1988년 7월에 청량음료 제조회사를 주관으로 업종자율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0년도에 들어와 설탕, 조미료, 화장품 등의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관련규정⁹⁾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동일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동일품목의 도매업자로 구성할 수 있으나, 유통구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품목 및 업종도 제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결성하려면 품목별 협의회 회원사의 매출합계액이 동일품목의 국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또는 협의회 회원사의 수가 동일업종의 전국 총사업자수의 50%이상이어야 한다(사무처리규정 제63조). 그리고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업무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교육/홍보/지도/상담, 상품판매량에 의한 유통구조 추적 및 분석, 무자료거래자, 미등록사업자, 자료상 등에 대한 정보수집·시정요구·관계 기관에 고발 등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한 필요조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매출거래처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회원사에 거래질서정상화 조직 상설/운영 유도, 기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자율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사무처리규정 제66조).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은 회원수 이상(최소 5명 이상)의 지도요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회는 지회에는 최소 3명 이상의 지도요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63조). 그리고 세무당국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규정 제70조에서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활동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협의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협의회가 자진하여 해산하는 때, 협의회가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 협의회는 운영실태 확인결과 협의회 운영이 부실하거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에 문제를 야기한 협의회로서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 회원사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가 빈번한 때)에는 당해 협의회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무처리규정 제64조).

9)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사무처리규정 제5권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당해 회원의 자격을 취소토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사무처리규정 제65조).

- 협의회를 자진하여 탈퇴하는 때
- 지도요원의 계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가 빈번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경정조사 및 추적조사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하는 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세무조사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서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활동실적 평가결과 성실한 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또는 추적조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현황

(개)

협의회 명	회원수	결성일자	지회	협의회 명	회원수	결성일자	지회
청량음료	8	88. 7. 19.	4	전자제품	2	96. 1. 26.	4
설 탕	3	90. 7. 4.	4	페인트·잉크	34	96. 1. 26.	3
조 미 료	2	90. 7. 12.	4	합판·목재류	34	96. 2. 2.	1
화 장 품	9	94. 6. 22.	4	라 면	4	96. 3. 11.	4
비누·세제	7	94. 7. 26.	4	식용유	6	96. 5. 8.	4
과자·아이스크림	6	94. 8. 11.	4	신발류	9	96. 3. 20.	1
화장지·위생용품	7	94. 9. 15.	3	종이컵	37	96. 5. 23.	4
납시용품	9	95. 1. 26.	-	장 류	53	94.11. 29.	4
수산물식품	12	95. 5. 16.	4	의약품	181	98. 3. 18.	4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합 계(18)	423		60

Ⅲ. 세무협력단체로서 현재 사업자단체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로 대표적인 몇 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5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항목을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로 우선 공평과세협의회로 T마트, 성실신고조합과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속하는 6개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에 대한 가입절차, 구성요건, 운영경비의 조달 방법,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1. 임의가입

현재 사업자단체의 가입은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회원가입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자단체의 가입이 가져오는 도움이 별로 없음을 고려할 때, 임의가입은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엄격한 구성요건

현행 규정상 사업자단체 구성요건이 사업자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으로 규모가 적은 상조회, 상우회 등 자생적 조직이 사업자 단체로 충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구성요건을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보다 많은 수의 사업자단체가 결성되고 세무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우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열악한 경비조달

현재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는 회원사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단체가 각 회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거의 없기에 각 사업자단체들은 회원사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회비만을 징수하여 이를 사업자단체의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단체의 경우는 관련기업(대부분이 회원사인 경우가 많음)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자단체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고 있어, 그 활동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문제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경우 성실도평가표를 제출하는 협의회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기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에 대하여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가시스템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경우 성실도 파악기준을 사업자의 전년대비 매출액 신장률,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에 대한 국세청기준의 85%를 충족하느냐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 신장률이 같은 해에도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경우는 업무활동내용서식에 의거 보고된 교육 및 홍보활동 건수, 세금계산서수수정상화노력, 협의회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 및 홍보 건수를 형식적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활동이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사업자단체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게 하는 평가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다.

5. 적절한 지원시스템 부재

현재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단체의 일방적인 책임만 강조한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단체에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홍보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없는 형편이다.

앞에 언급한 평가시스템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잘 들어나는 곳이 성실신고회원조합이다. 당초 업종별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협력단체로 구성되었던 성실신고회원조합은 현재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업종이 세무협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조합의 성실도 분석에 필요한 보고기능의 결여로 성실도를 판정하기 어렵고, 둘째, 성실신고회원조합에 대한 세정상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차등관리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셋째, 조합결성회원과 비조합인 일반납세자와 행정관리 면에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당초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결성취지와는 달리 운영 면에서 다소 괴리가 있어 왔기에 성실신고회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한때 세정당국은 1988년 12월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시 동 조합을 비롯한 세무협력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기준율의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한바 있으나, 현재는 표준소득율 등 관련된 규정의 폐지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제공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편이다.

현재 유일한 유인수단으로 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규정된 성실성이 입증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배제규정은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업자단체가 더욱 침체하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지원시스템은 사업자단체에게는 너무 빈약하고 형식에 치우친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외에 실질적인 세무조사의 면제나 나아가 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전

적인 지원을 포함한 본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사항

위의 사항이외에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부 사업자단체는 세무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육성지원(사무처리규정 제67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불성실한 회원의 자격취소 규정(사무처리규정 제65조)의 철저한 시행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새로운 국세청예규에 대하여 각 사업자단체에 즉각 홍보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국세청이 더욱 많은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무협력단체로서 세무당국과 여러 가지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와 세무당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자단체에서 건의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단체는 현재 운영경비는 개별 사업자들의 회비로 조달하면서 업무는 국세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세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 결성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성실 세무신고에 대한 우려와 납세자 접촉금지 방침 등으로 인해, 단체 자율에 맡겨져 명목만 유지되고 있을 뿐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IV. 사업자단체 활성화를 통한 세원관리 방안

현재 세정당국이 납세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 대한 자율규제활동을 통하여 성실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세무당국이 간접적인 행정지도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신고가 사업자단체 자율에만 맡겨져 있고 세무협력단체로서의 사업자단체의 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무자료거래를 포함한 각종 불성실 세무신고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개별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자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세원관리 방안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세정당국은 사업자단체를 활용한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사업자단체의 복원 및 활성화

사업자단체를 새로운 세원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활성화하거나 유명무실한 사업자단체를 복원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정당국

은 사업자단체의 실태와 그 운영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사업자단체별로 그 운영형태와 활동상황이 매우 상이하므로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파악을 근거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사업자단체를 정상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파악이 전제가 된 후에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가. 사업자단체의 재분류

우선, 기존의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자단체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네 가지로의 사업자단체의 분류는 성실납세신고유도라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에, 세원관리 측면에서 사업자단체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단순협력사업자단체로 재분류한다. 납세협력사업자단체는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무당국의 성실납세실현에 협조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포함하며, 현행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와 성실신고회원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납세협력사업자단체는 각 회원사에 대한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성실신고유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각 회원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회원사의 무자료거래, 자료상거래, 신용카드번칙거래 등을 파악하여 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순협력사업자단체는 성실납세에 대한 홍보 등에는 협조하지만 소속된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유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현행 납세자협회와 공평과세협의회가 포함될 수 있다. 즉 단순협력사업자단체는 세무당국을 위하여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세무당국에 협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단체를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¹⁰⁾ 각 사업자단체의 성격에 맞게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와 지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나. 구성요건의 완화

이 외에 새로운 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업자단체 가운데 상조회, 상우회 등 기존의 자생단체도 세정당국의 세무협력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수가 30인 이상이고, 자생단체의 대표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그 업종, 과세유형, 시장점유율, 상근지도요원 확보여부 등에 관계없이 세무협력단체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세원관리 차원에서 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10) 만일 앞에 제시된 새로운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단체의 분류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업자단체의 성실납세협력정도와 각 사업자의 성실납세정도에 따라 세원관리측면에서 각 사업자단체를 새로이 분류할 수도 있다.

2. 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방안의 수립

다음으로 각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제 적용하여 각 사업자단체의 성실성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안의 수립은 사업자단체를 새로운 세원관리 방안으로 이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사업자단체의 성격에 따라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단순협력사업자단체별로 각각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가. 납세협력사업자단체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납세협력사업자단체는 사업자단체의 성실납세협력정도와 해당 사업자단체에 속한 각 회원사의 성실신고정도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자단체의 성실납세협력정도

사업자단체의 성실납세협력정도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기준을 이용하여 각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가) 사업자단체의 조직과 운영현황

해당 사업자단체에 속한 여러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 조직의 구성 : 회장단 등의 구성현황을 포함하여 조직구성의 일반적인 현황파악을 통하여, 사업자단체로서의 성실신고 지도가능 능력을 평가한다.
- 지도요원 확보현황 : 사업자단체에서 소속 회원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 정확한 기장 및 성실한 세무신고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의 확보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사무국의 운영현황 : 상근 직원의 수를 파악하고, 실제 사무국에서 성실신고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국의 운영경비 조달 방법 등을 파악하여 사업자단체가 각 사업자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각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단체의 성실신고협력정도

사업자단체가 그 단체에 속한 각 회원사에게 성실신고를 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세정당국에 협력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교육 및 홍보활동 :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실질적으로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해당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한 세무신고교육활동 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보다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
- 각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활동 : 각 사업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예를 들 수가 있다.

- 소속 사업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자료상거래 등 불성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및 적발시 세무당국에 신고 정도
- 명의위장 사업자의 적발 활동 등 성실신고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및 적발시 세무당국에 신고 정도

(2) 소속 회원사의 성실신고정도

해당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각 회원사가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는 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회원사의 다음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할 수 있다.

- 실제 성실신고정도 : 해당연도의 각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등 성실신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 일정기간의 불성실신고정도 : 과거 일정기간(3년 혹은 5년 동안) 자료상 및 무자료거래나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된 경우가 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 성실신고를 위한 장치의 도입정도 : 소속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의 도입정도와 활용정도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회원사가 가맹점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 회원사의 소득의 대부분 노출이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단체의 성실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¹¹⁾

각 사업자단체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여야 할 활동은 “사업자단체의 성실신고 유도 활동”과 “소속 회원사의 성실신고 정도”이며, 이에 대한 각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순협력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방법

단순협력사업자단체의 경우는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달리 세무당국의 성실신고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세정당국에 협력하는 활동이 주활동이기에 이러한 활동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협력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홍보활동 :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는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실질적으로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해당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한 세무신고교육활동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보다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에 대한 각종 홍보물 게재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홍보물의 배포, 무자료 거래 등 성실신고를 위배 행위에 대한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1)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갖추어 매출액등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는 성실사업자로 인정하여 해당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주고 있다.

다.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세정당국은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각 사업자단체의 성실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사업자단체의 성실도에 따라 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도에 따라 지원의 규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성실도와 앞으로 관리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실 사업자단체, 지도필요 사업자단체, 적극지도필요 사업자단체 등으로 사업자단체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세정당국에서는 각 소집단에 속한 사업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마련하여, 전담체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2인 1조 등의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각 사업자단체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홍보활동 및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 방법의 개선 및 적용

현재 일부 사업자단체(성실신고회원조합,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일정기간(반기, 1년)마다 사업자단체의 활동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단체에서 활동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무처리규정 제55조). 즉 현행 사무처리규정에 의할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한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현재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경우 성실도평가표를 제출하는 조합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활동표의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없이, 제출된 서류에 의한 평가가 주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자단체를 세원관리의 방안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의 평가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각 사업자단체에게 일정기간(1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출된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세무당국에서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각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세밀하게 평가한다.¹²⁾ 물론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면 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실제 활동상황이나 사업자단체의 운영형태 등에 대한 실제 평가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당국의 다른 조사에 따라 파악된 무자료거래, 자료상거래나 위장사업자거래 등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도 위의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평가에 앞서 세무당국은 사업자단체 스스로 상시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가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즉 성실신고에 반하는 자료상 행위, 무자료거래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불성실하게 세

12)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국장)이나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현지출장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 부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현지 확인 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신고를 한 회원사에 대한 신고권이나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에 따른 현지 확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세무당국에서의 현지 확인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도 검토 가능하다.

3.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현행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당국은 성실한 세무협력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또는 추적조사 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이외에 세무당국은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사에 대한 홍보·지도·상담·신고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나 소속된 회원사들이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단체의 가입 필요성이나 사업자단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성실한 사업자단체와 그에 속해 있는 회원사에 대하여는 보다 확실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한 사업자와 불성실한 사업자간의 차등지원인식을 관련 사업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과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정하여 고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 일부 사업자단체(성실신고회원조합 및 납세조합 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의 일정비율을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실한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러한 혜택은 현재 없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하여, 세정당국의 성실신고에 성실히 협조하는 사업자단체에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부여의 개요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국세청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세무당국의 성실신고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만 각종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세정당국의 성실신고노력에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단체나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다음의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의 논의를 참조).

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인센티브)의 종류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과 비금전적인 지원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지원의 수혜자에 따라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소속 회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금전적 혜택

(가)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으로 우선 세무당국에 성실히 협조하는 사업자단체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업자단체가 각 회원사에게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는 일정한 규모의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경비를 세무당국에서 일정부분 보전할 필요가 있다.¹³⁾ 이때 지원 금액을 결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속 회원사의 수
- 소속 회원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
- 각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사를 상대로 성실신고에 협력한 정도: 해당연도에 무자료거래, 자료상 거래 등 각종 탈법사례를 적발하거나 각 회원사를 상대로 하여 계도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다음으로 사업자단체의 소속 회원사에 대한 세무신고현황을 분석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단체에 속한 회원사의 신고실적을 집계하고 분석하여, 그 신고내용이 동종업종의 평균신고성향보다 높은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매출액신장률, 부가율, 그리고 세금계산서발행비율 등을 기준으로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사업자단체 소속 개별 회원사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개별 회원사에 대한 금전적 혜택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가가치세 조사의 배제 혜택이다. 세무조사의 배제는 직접적인 금전적 효과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금전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도 성실한 세무협력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부가가치세경정조사 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면제혜택은 사업자단체에 속한 각 회원사에게 가장 좋은 성실신고유도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성실납세자세액공제 등 세금공제를 소속 개별회원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즉 사업자단체가 성실한 단체로 판정받을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에게 세금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¹⁴⁾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사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 및 지도하고, 그 활동을 세무당국에서 평가하여 볼 때 사업자단체가 충실한 세원관리의 역할을 할 경우 각 회원사에게도 일정부분의 금전적 혜택의 부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제도를 향후에 소득세(혹은 법인세)부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 이와 유사한 제도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납부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169조). 납세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웅희(2005)에 정리가 되어 있다.

14) 이와 유사한 제도로 납세조합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즉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징수할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조합공제로 세액공제를 한다(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그리고 성실한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를 상대로 성실납세보상제도(Tax Mileage)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¹⁵⁾ 이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실시한다. 즉 연간 누적납부액이 일정액 이상인 회원사, 전년대비 신장률 등 다른 회원사보다 많은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거나, 공용주차장 할인 및 무료사용 혜택의 부여 등으로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2) 비금전적혜택

(가) 사업자단체에 대한 비금전적 혜택

우선 세무신고업무에 대한 지도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세무신고에 대한 자료나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기간중에 「성실사업자단체」전담창구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사를 신고시 우대하는 제도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용 PC를 대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와 세정당국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각종 세무신고 전에 담당 세무관서와 사업자단체간에 실질적인 의견교류가 가능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회원사(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세무당국이 세무관서에서 간담회를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간담회시 세정당국의 성실신고 권장 등 세무당국의 전달사항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방법 등을 간담회내용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적극적인 성실신고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가 쉽게 세무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요원을 배치하거나, 고문세무대리인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사업자단체나 소속 회원사에 현장과견청문관을 파견하여 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하여 줌으로써, 사업자단체와 세무당국간의 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 기존의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¹⁶⁾

(나) 사업자단체 소속 개별 회원사에 대한 비금전적 혜택

앞에 언급한 각종 비금전적인 혜택을 사업자단체에 속한 각 회원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

15) 지방세부분의 Tax Mileage 도입에 대하여는 이기영 외(2001)를 참조하시오.

16) 예를 들어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의 완화, 납세자의 날 정부표창·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항공이용시 편의제공,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이나 할인혜택부여, 금융기관의 최고 등급 고객으로 우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법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단체를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단순협력사업자단체로 구분할 경우, 두 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납세협력사업자단체의 경우는 세무당국을 대신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협력사업자단체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협력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비금전적인 지원 이외에 세액공제 등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각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단순협력사업자단체의 경우는 세무당국의 홍보 등의 활동에 단순한 협력하는 활동이 주활동이므로, 단순협력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비금전적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세무당국의 성실납세정책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준 성실한 사업자단체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성실신고협력정도에 따라 사업자단체별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가입회원과 미가입회원에 대한 차등이 느껴질 정도로 각종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관리 방식으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구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금전적인 혜택을 적극 부여하여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¹⁷⁾ 비금전적인 혜택의 경우도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향후 납세협력사업자단체가 세원관리협력단체로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속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사업자단체를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이용할 경우, 세무당국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사업자단체와 그 소속 회원사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불성실한 사업자단체라 함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자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업자가 속한 사업자단체를 의미한다.

- 각종 신고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성실한 사업자
- 자료상거래, 무자료거래 또는 부실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업자
- 기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자

만일 사업자단체가 불성실한 사업자단체로 판정되는 경우, 이미 언급한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취소이외에, 그 불성실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17) 이와 유사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규정된 성실신고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감면을 주면서 첫째 경감율을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감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참조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방안

일단 불성실한 사업자단체로 판정되는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하여 그 혜택을 취소하며, 해당 회원사에 대하여 세무조사실시 등 세무당국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단체나 그 회원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추가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 성실 사업자단체로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음
- 불성실한 세무신고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에서 자체적인 제재(회원의 탈퇴 권유 등)를 실시하도록 권유함
- 소속회원에 대한 성실납세의식 제고 촉구 및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함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활동은 계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사업자 단체의 그 동안의 활동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그 성실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적용 방안

납세협력사업자단체의 경우는 세무당국의 세무신고에 불성실하게 협조할 경우에 각종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단순협력사업자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협력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불성실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통보,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회원사에 대한 홍보의 강화 등에 대한 협조의뢰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세정당국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현재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세원관리의 역할은 물론 그 본연의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로 세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지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각종 지원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정당국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각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항상 듣고 이러한 사항을 사업자단체의 편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업자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이를 통하여 세원관리에 대한 협조를 세정당국에서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을 계속 파악하기 위하여는 앞에 언급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이다. 즉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업무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이다.¹⁸⁾ 이러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하여 각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

18) 현장파견청문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국세청의 보도자료인 “현장파견청문관 출범 및 조직개편 단행”(2005년 9월 1일자)를 참조하였다.

점을 수집하여 일단 사업자단체를 활성화하고, 이 활성화를 통하여 세정당국의 세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업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나,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자단체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확립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세정당국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사업자단체가 보다 잘 정착하고, 세정당국의 세원관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사업자단체 활성화 방안 : 요약

이상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분류, 평가, 지원 및 규제책은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사업자단체의 분류, 평가, 지원 및 규제(요약)

구분	납세협력 사업자단체	단순협력 사업자단체
업무	- 세무당국의 성실신고행정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업무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 현재의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와 성실신고회원조합이 해당됨	- 세무당국의 성실신고행정에 대한 단순한 홍보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사업자단체 - 현재의 납세자협회와 공평과세협의회(집단상가)가 해당됨
평가	사업자단체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세무당국이 일정부분을 직접 평가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협력보고서를 근거로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함
지원	- 성실 사업자단체/회원사에만 제공 - 금전적 지원책을 우선하고, 지속적으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비금전적 지원만을 제공함
규제	- 불성실한 사업자단체나 회원사만 해당 - 강력한 규제조치	재발방지 촉구 등 소극적 규제조치

V. 결 론

본 연구는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과 지역담당제의 폐지 조치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세정당국은 납세에 관한 홍보, 지도, 상담, 신고를 집단관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정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성실한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

기 위하여 세무협력단체를 결성·관리하여 왔다. 현재 세무협력단체로 상설집단상가(시장)공평과세협의회, 동업자납세자협회,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있다.

사업자단체 관련 규정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세원관리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가입이 임의가입이어서, 사업자단체의 가입이 가져오는 도움이 별로 없음을 고려할 때, 가입단계에서 회원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행 규정상 사업자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하여 상조회, 상우회 등 자생적 조직이 사업자 단체로 충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세무협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네 번째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경우 성실도평가표를 제출하는 협의회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없다. 즉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단체의 일방적인 책임만 강조한 규제 위주의 운영과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없다. 현재 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배제규정은 있으나,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 접촉금지 방침 등으로 인해 세무신고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사업자단체는 그 명목만 유지되고 있을 뿐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사업자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세정당국은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성실납세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부활시키고,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자단체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단순협력사업자단체로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협력사업자단체는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무당국의 성실납세실현에 협조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포함하며, 단순협력사업자단체는 세무당국의 성실납세에 대한 단순한 홍보 등에는 협조하지만 소속된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유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자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여 각 사업자단체의 성실성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사업자단체를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이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세무당국의 성실신고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혜택을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반대로 세무당국의 성실신고노력에 역행하는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제거하고 투명한 세원관리로의 전환 기회를 마련하고 종전 직원 위주 세원관리에 의한 유착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간담회나 단체 교육은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각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체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0.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 종합보고서」.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4.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발표.
- 국세청. 2003.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2005. 사업자단체 활성화 계획(안).
- 국세청. 2005.9.1. 현장과견청문관 출범 및 조직개편 단행.
- 김응희. 2005. 「납세조합의 효율적 관리개선 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서희열. 2001. “신용카드제도의 세법상 평가와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 pp.229-260.
- 디지털세정신문. 2005. 11. 28. “세무협력단체 제구실 못한다”.
- 이기영·서희열·김영옥. 2001. 「중소기업인 사기양양을 위한 Tax Mileage 제도」. 경기개발연구원.
- 재무부. 1990. 「한국부가가치세제사」.

Taxpayer Associations as a Way of Efficient Tax Resource Management

Suh, Hi-Youl* · Kim, Yu-Chan** · Shim, Tae-Sup***

— <Abstract> —

Since the function-oriented organizational chang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t is forbidden for tax officials to contact directly with taxpayers. In this article we suggest to employ taxpayer associations as a way of efficient tax resource management. For the employing taxpayer associations, at first, they must be activated. At second, the cooperation activities of taxpayer associations for tax authorities have to be evaluated objectively. At third, strong incentives for cooperative taxpayer associations must be provided by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s for taxpayer associations, which are non-cooperative and abuse this system.

<Key words> Taxpayer Association, Tax Resource Management

*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